

전주지방법원 2021. 1. 14 선고 2020나2369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1. 1. 14 선고 2020나2369 판결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부안군법원 2020. 2. 7 선고 2019가소68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1. 망 B의 소송수계인 C

2. D

변론종결 2020. 11. 12.

판결 선고 2021. 1. 14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20. 2. 7. 선고 2019가소 685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3. 피고 D에 대한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고, 피고 D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.
4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(C)은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제1심법원은 소송수계 전 피고 B이 2019. 10. 1.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수계 전 피고 B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"원고에게, 피고 D는 20,000,000원, 피고 C은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로 보았으나 다음 이유 제2. 소송수계 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, 적법한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(C)에 대하여만 청구한 것으로 본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소송수계 전 피고 망 B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2013. 6. 3.경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E 전 4,866㎡ 및 F 답 2,508㎡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에 대하여, 매매대금 1억 5,000만 원(계약금 1,500만 원, 중도금 1,400만 원, 잔금 1억 2,100만 원)으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2013. 6. 3. 2,300만 원, 2013. 6. 27. 200만 원, 2013. 7. 23. 200만 원 합계 2,700만 원을 지급하였다(원고는 2013. 6. 25. 30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).

다. 원고는 2018. 10. 30. 망인에게 '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계장 허가가 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계장 허가가 나온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돈 3,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, 이 통고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위 3,000만 원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통고서를

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, 위 통고서는 그 무렵 망인에게 송달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소송수계 신청에 관한 판단

당사자의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적법 여부와 이유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, 망인의 제1심 소송대리인의 2019. 10. 14.자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.

망인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인이 2019. 10. 1. 사망하자, 2019. 10. 14.자 보정서를 통하여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 D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(C)임을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.

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,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(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1409 판결 등 참조), 제1심 법원이 위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2019. 12. 6.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그 이후의 재판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런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고(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),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(민법 제1019조 제1항),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므로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. 따라서 위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는 위 망인이 사망한 2019. 10. 1.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소송수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2019. 12. 12.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, 이에 위 법원은 2019. 12. 23.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법원이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신청인에게 그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므로(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,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1895 판결 등 참조), 피고 D에 대한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고, 피고 D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.

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기간 내에 한 위법한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포기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흠은 치유되는바,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(C)은 제1심 법원의 2019. 12. 9.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2019. 12. 20.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, 이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일까지 상속포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(C)에 대하여 진행한 소송행위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수계신청이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있다고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시켜 새로운 당사자의 이름으로 판결이 난 경우, 이것이 상소심에서 발견되었으면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 또는 취소하고(본 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참조), 수계신청을 기각하고, 진정승계인과의 관계에서 중단 중인 소송이 아직 원심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원심으로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(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21802 판결 등 참조), 진정승계인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(C)에 대한 제1심판결 부분도 항소되어 당심에서 판단하는 이상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만 하고,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, 소송수계로 인한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(C)에 대한 청구 전부에 대하여 당심에서 판단한다.

3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양계장 허가를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매매대금 중 3,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, 망인은 양계장 허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계장 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(원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본다).

나. 구체적 판단

살피건대,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13. 6. 3. 망인으로부터 이

사건 각 토지 및 그 외 1필지를 150,000,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,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의 주된 동기인 '양계장 운영'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, 그 후에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양계장 허가를 건네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나 교섭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주로 주위 사람들의 단순한 확인서로,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고,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망인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양계장 허가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원고는 양계장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준비행위를 하였는지, 망인은 그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등 이 사건 계약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전후사정을 알 수 없다.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에 기초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양계장 허가를 받아줄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(한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(C)은 2019. 7. 4.자 답변서에서 망인은 8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,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,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.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의사에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, 원고가 양계장 허가에 관한 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나 이를 전제로 한 판단은 더 나아가 하지 않기로 한다)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,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의 흠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피고 D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오재성

판사김범준

판사이슬아